

# 망중립성 거버넌스<sup>114)</sup>

## - 기원, 내용과 동향에 대한 개요 -

필자 매티스 반 베르겐 (Matthijs van Bergen)<sup>115)</sup>

번역 신하영<sup>116)</sup>, 김보라미<sup>117)</sup>

망중립성은 오늘날 인터넷 정책에 있어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 중 하나이다. 이 글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하지만, 다른 국가들과 지역의 경우도 훑어봄으로써, 망중립성 거버넌스의 기원, 내용, 그리고 그 동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분석해 보았다.

### 1. 망중립성 논쟁의 기원

인터넷은 사상과 정보를 취득하고 전달할 개인의 자유를 대단히 증진시켜 왔다.<sup>118)</sup> 그러나

최근 십년 전부터 학계와 공공정책 관계자들은, 그동안 인터넷과 그 기술설계에 대한 디자인 원칙들의 본성이라고 인식했던 자유와 민주주의가, 정부와 민간 영역 두 곳으로부터 위협 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속적인 경고를 제기했다. 초창기의 경고는 대부분 미국에서 나타났으며, 그 시기는 1994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sup>119)</sup>

‘망중립성’이라는 용어는 2002년 컬럼비아 대학 교수인 팀 우에 의하여 탄생했다. 팀 우는 ‘망중립성을 위한 제안’이라는 논문

114) 이 번역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2013년 인권단체협력사업의 지원을 받아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이 2014년 발간하는 『인터넷 거버넌스를 말하다』라는 책에 실릴 예정입니다.

115) Matthijs van Bergen works as a legal advisor at ICTRecht, and is simultaneously developing his PhD thesis concerning net neutrality and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speech and privacy in information societies at Leiden University. Matthijs has advised the Dutch NGO Bits of Freedom concerning net neutrality from 2010 to 2012, on an entirely voluntary (‘pro bono’) basis. Currently Matthijs is also serving as a network neutrality expert for the Council of Europe

116)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원(Managing Editor at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숙명여대 박사 수료(Ph.D candidate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BD), 크리에이티브커먼즈 코리아 활동가(Volunteer of Creative Commons Korea)

117)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코디네이터

118) The importance of the free and open Internet for the freedom of expression has been stressed in countless publications. A few prominent ones: F. La Ru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report of 16 May 2011, no. A/HRC/17/27;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Council conclusions on the open Internet and net neutrality in Europe’, 13 December 2011; Council of Europe, ‘Declaration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on network neutrality’, 29 September 2010.

119) See i.a. Noam 1994, Lemley & Lessig 1999, Lessig 1999, CBUI 2002, Lessig & Wu 2003, Privacy International & GreenNet 2003, Zittrain 2008, Nunziato 2009, Bendrath & Mueller 2010, and Van Schewick 2010.

을 발표하면서, 이 논문을 통해 “광대역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대역폭 사용과 로컬(local)의 다른 문제들을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는 자유가 있는 반면에, 광대역 서비스 사업자가 손해(harm)의 입증 없이, 인터넷 연결을 통하여 이용자가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는 제안을 하였다.<sup>120)</sup> 그 해 11월, 광대역 서비스 이용자와 혁신가들- 여기에는 아마존닷컴, 애플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소비자 전기 협회(the 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 등이 포함됨- 의 임시적인 연합체인 CBUI(the Coalition of Broadband Users and Innovators)가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들은 소비자들과 인터넷 이용자들이 적법한 콘텐츠와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제한 없는 권리를 누리고,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하고 상호작용하며, 전송망 사업자(transmission network provider)들에 의한 방해 없이 원하는 인터넷 주소지에 송신하는 행위를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도록 FCC가 이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전미 케이블 & 방송통신 연합(NCTA: The National Cable & Telecommunications Association)’, 콤캐스트(Comcast), 그리고 다른 광대역 사업자들은 뒤이은 진정서에서 규제는 불필요하며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FCC가 이러한 규칙을 제정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다.<sup>121)</sup>

이는 미국에서 법과 정책을 통해서 망중립성을 보장해야 하는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루어진 지난하고 격렬하게 이루어진 망중립성 논쟁의 시작이었다. 이 논쟁은 곧 전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도 퍼져나갔고, 현재는 망중립성보호취지가 규정된 규칙(Regulation)<sup>122)</sup>이 제안된, EU의 상황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기도 하다.<sup>123)</sup>

이 논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결과는 향후 인터넷, 즉 오늘날 정보사회가 형성되어 온 기술적, 사회적 플랫폼이 발전할 방향과, 근본적인 권력구조와 권력분배 형성을 중요한 수준으로 결정할 것이다.

## 2. 망중립성의 내용

램리(Lemley) 교수와 레식(Lessig) 교수는 인터넷의 특별한 성장과 성공은 근본적으로 인터넷 설계 원칙에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 왔다.<sup>124)</sup> 정책과 기술은 많은 측면에서 비슷하고 자주 서로 영향을 준다. 과학과 기술 모두,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생활을 증진시키는 의도가 있거나, 또는 적어도 그래야만 한다. 또한 어떤 기술이나 정책을 만들 때, 다양하고 경쟁

120) Wu, 2002

121) National Cable & Telecommunications Association Ex Parte Letter, December 10, 2002.

122) EU의 규제방법 중 하나로, 각 국에 대하여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방법으로 우리나라 규칙의 의미와는 다르다.

123) Proposal for a Regulation laying down measures concerning the European single market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to achieve a Connected Continent, COM(2013) 627 final, 2013/0309 (COD).

124) Lemley & Lessig 1999

적인 이해관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타협-이 타협안에는 서로 합쳐지기 어려울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회적 의미들이 있기는 하다-이 항상 존재한다. 정책 원칙들과 기술적 설계 원칙들은 특정한 구체적 사안에 대한 타협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에서 공통점이 있다.

인터넷 분야에서 정책과 기술은 깊은 수준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기본 디자인 원칙들 중에는 특정 민주주의 원칙들과 상당한 수준으로 유사성을 가지는 부분이 있다.

망중립성은 그 용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인터넷 트래픽 전송 과정에 적용되는 비차별적 원칙을 의미한다.<sup>125)</sup> 망중립성은, 원칙적으로 모든 인터넷 트래픽이 동등하게 전송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최소한 특정 응용프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기기나 이용에 대하여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히,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전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sup>126)</sup>

이 원칙은 단대단 원칙(end-to-end principle)과 긴밀하게 연결 되어 있고, 실제로 단대단원칙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단대단 원칙이란, 망의 기능(정보처리기능intelligence)이

끝단(호스트)에 있어야 하고, 중앙(라우터)에서의 기능은 필요할 때에만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sup>127)</sup> 이렇게 단대단 원칙은 민주주의의 보완성(subsidiarity) 원칙을 상기시킨다. 보완성 원칙이란 권력과 자치는 가능한 한 분권화되어야 하며, 오직 정당한 (공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중앙집중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사성을 인지하는 것은 망중립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망중립성이 근대 (유럽) 정보 사회의 헌법적 원칙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이는 삼권분립(triás politica)과 같이, 민주적 사회조직들을 이끌어 온 다른 기본원칙들처럼 유사하게 중요한 것을 이해하는 데에도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보완성의 원칙은 유럽 인권법과 연관은 있지만, 다소간의 차이를 가진다. 즉, 유럽인권법에서는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과 관련되어서는 어떠한 (중앙집중화된) 국가의 개입이나 규제는, 그 개입이 필요하고, 좁게 특정하게 제한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례하는 범위 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여전히 명백히 효과적이면서도 가장 최소한도로 제한적인 수단이 사용되어야 한다. 유사

125) Wu may have better called it Internet neutrality instead of network neutrality, because the principle is commonly understood to apply only to Internet traffic and not necessarily to traffic which may flow through specialized services offered on closed digital networks utilizing the Internet Protocol.

126) For further explanation of the concept of application-agnosticism, see Van Schewick 2012.

127) The “broad version” of the end-to-end principle is defined by Barbara van Schewick as follows: “a function or service should be carried out within network layer [i.e., available to all clients of the network] only if it is needed by all clients of that layer.” Art. 5(3) of the Treaty on the EU states: “Under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n areas which do not fall within its exclusive competence, the Union shall act only if and in so far as the objectives of the proposed action cannot be sufficiently achieved by the Member States, either at central level or at regional and local level, but can rather, by reason of the scale or effects of the proposed action, be better achieved at Union level.

하계,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대한 어떠한 제약과 차별, 혹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다른 종류의 (중앙집중화된) 조치는, 그 조치가 필요하고, 좁게 제한된 특정한 정당한 목적, 예를 들어, 네트워크와 이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들, 또는 이에 연결되어 있는 기기들 간의 통합성(integrity)과 보안(security)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즉, 디도스(DDoS)공격 등 유해 소프트웨어 등을 차단하기 위해)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례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모듈(module), 계층화(layering)와 단대단과 같은 기술적 디자인 원칙들이 결합되어, 네트워크 내부의 계층과 기능들을 통합하고, 특정 응용프로그램을 위하여 네트워크를 최적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종류의 효율성을 버리고, 인터넷을 전체적으로 개방적이고 다목적이며, 유연하고, 활발하게 만들게 되었다.<sup>128)</sup> 이 디자인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허가나 계약관계 없이도, 자연스럽게 이용자들이 선택한 어떠한 온라인 콘텐츠,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든지, 선택한 기기로 송수신할 수 있고, 다른 원하는 인터넷 이용자와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게 하여,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혹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집단적인 자기결정을 촉진시켰다.

민주주의 사회는 개인과 집단의 자기결정이라

는 이상에 기반하고 있으며, 거버넌스 시스템으로써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 사회보다 활발하고 유연하며 개방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삶의 모든 영역이 중앙집중적으로 통제되고 모든 반대주장들을 잠재워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효율성을 포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특기할 만한 인터넷 설계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적 요소는 인터넷을 작동시키는 기술 프로토콜(protocol)이 하버마스의 실천적 담론(practical discourse)을 구성하는 것 같은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절차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sup>129)</sup>

인터넷 프로토콜을 만들어 가는 이러한 실천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하고, 철저히 민주적인 접근방식은 오늘날 인터넷과 관련된 정책을 발전시키는 과정과 계획에 계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규칙(Regulation) 초안<sup>130)</sup>을 다듬어 가기 전에, 망중립성에 관한 다양한 (복수의) 인터넷 협의체들을 조직해 왔다. 그리고 (인터넷거버넌스포럼 내의) 망중립성 역동적 연합(the Dynamic Coalition on Net Neutrality)<sup>131)</sup>은 망중립성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인터넷 공공 서비스와 기본권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몇몇 소수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혁신을 위한

128) For a much more detailed and complete analysis and description of the principles of modularity, layering and end-to-end, see Van Schewick 2010

129) See: Belli & Van Bergen 2013.

130) Proposal for a Regulation laying down measures concerning the European single market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to achieve a Connected Continent, COM(2013) 627 final, 2013/0309 (COD).

131) <http://www.intgovforum.org/cms/dynamic-coalitions/1330-dc-on-network-neutrality>.

권력을 집중시키기보다는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혁신을 위한 권력을 나누어 주는 것과 관련된 법적 체계를 정교하게 발전시키는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절차를 활용했다. 인터넷 거버넌스의 이러한 참여적이면서 멀티스테이크홀더(multi-stakeholder)적인 절차들은, 인터넷이 가지는 속성 자체, 또는 그러한 속성에 따라 가능했다. 위 절차들은 인터넷 설계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민주적 가치들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이는 앨 고어(Al Gore)가 1994년에 한 연설에서 제안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아테네 시대’(New Athenian Age of Democracy)<sup>132)</sup>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인터넷을 이용자는 이상이기도 하다.

근대 국가(nation states)의 존재, 조직, 권력이 지배 엘리트의 번덕이나 욕망이 아니라 시민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정당화된다는 민주주의 이상과 유사하게, 모든 정보통신망의 존재는 궁극적으로는 서비스 제공자가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이용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의사에 따라 합법화된다. 시장의 힘이 인터넷 접근을 제공하는 자와 그러한 이용을 이용하는 자들 간의 이해관계의 균형과 조율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범위 내에서, 민주적으로 채택된 교정이 요구된다.

### 3. 법체계의 발전과 동향

지난 몇 년간, 망중립성에 관한 법체계는 다음과 같이 발전해 왔다.

- 2009년 11월 경 유럽입법자들은 텔레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신 규제체제(New Regulatory Framework : NRF)를 채택했다. 이 신 규제체제에서는 전자 커뮤니케이션 회사들에 대한 투명성 요건과 함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각 국의 규제기구들에 의하여 촉진되어 온 정책목적과 규제원칙으로서의 망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공동규제자들의 의지를 모두 고려하여, 인터넷의 개방적이고 중립적인 성격을 보존하는 것을 우선 순위에 둔다” 고 선언하였던 망중립성에 대한 집행위원회 선언(Commission Declaration on Net Neutrality)이 포함되어 있다. 2009/136/EC 지침(directive)의 28조에서 구체적으로 “2002/21/EC 지침(directive) 제8조에서 규정된 것처럼, 국가 규제기관은 이용자들의 정보에 접근하고 배포할 권리, 그들의 선택에 따른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증진시켜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2010년 7월 경 칠레는 전 세계 최초로 망중립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을 채택한 국가가 되었다. 칠레의 이 법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적법한 활동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차단 또는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sup>133)</sup>

132) Al Gore, Information Superhighways Speech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Monday March 21, 1994, available at <http://vlib.iue.it/history/internet/algorespeech.html>.

133) Technollama, co, uk, 28 January 2012, 'Chile enforces net neutrality for the first time, sort of', <<http://www.technollama.co.uk/chile-enforces-net-neutrality-for-the-first-time-sort-of>>.



• 2010년 11월 경,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는 6월 말부터 9월 말 까지 이루어진, 318개의 의견이 첨부된, 공공 협의과정을 끝내고, “유럽에서의 오픈 인터넷 과 망중립성에 대한 정상회의” 를 개최했다. 공공 협의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의 의견들은 일반적으로 EU 텔레콤 프레임워크(telecommunication framework)가 인식된 이슈들(질문 3)을 다룰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몇몇 소수가 이 지점에서 추가적인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라고 기술되어 있다.<sup>134)</sup>

• 2010년 12월 경 FCC는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에 따라, 망 사업자들이 적법한 콘텐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유해하지 않은 기기를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을 채택했다. 이 규칙에는 미국의 인권 용어들, 예를 들면 “엄격히 특정하게 제한된(narrowly tailored)” 과 같은 용어들이 사용되었다.

• 2010년 12월 이스라엘 의회는 무선 통신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되는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채택하였다. (인터넷전화 포

함)<sup>135)</sup>

• 2011년 7월 경 벨기에 의회에서는 같은 해 6월에 네덜란드 의회 하원에서 채택한 것과 같은 법안이 제안되었다.

• 2011년 11월 경, 유럽의회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하여 인터넷의 개방성과 중립성 원칙을 수호하고 이용자들의 정보에 접근하고, 배포할 권리, 그들이 선택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진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 포함된 결의를 채택했다.<sup>136)</sup>

• 2012년 5월 네덜란드 의회 상원에서 망중립성을 보호하는 법 제안이 통과되었다. 네덜란드 법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정당한 목적에 필요한 경우(예, 혼잡 완화, 망과 기기의 안전 보호)가 아니라면,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법에 규정하였다. 이 법의 구성은 ECnHR(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 영향을 받았다. 디지털 어젠다(Digital Agenda)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인 크로스(Kroes)는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몇 차례나 네덜란드 법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를 하였다.<sup>137)</sup>

• 2012년 5월 경, 베렉(BEREC, 유럽전자통

134) This may be considered surprising, given the fact that submissions made by civil society organizations such as European Digital Rights, Bits of Freedom and La Quadrature du net, the Free Knowledge Institute,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sers Group, Universities such as the Essex University, as well as prominent application providers such as Skype had (often loudly) cried for additional regulatory measures to ensure end users' ability to access and distribute the information or run the applications and use the services of their choice on the Internet.

135) Broadband Traffic Management, 7 December 2010, 'Net Neutrality [Israel] - Parliament Approved Wireless Neutrality' <<http://broadbandtrafficmanagement.blogspot.be/2010/12/net-neutrality-israel-parliament.html>>.

136) European Parliament 7 November 2011,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n the open internet and net neutrality in

137) ZDNet 3 October 2011, 'Kroes attacks Dutch net-neutrality rules', <<http://www.zdnet.com/kroes-attacks-dutch-net-neutrality-rules-3040094084/>>(l.c.o, 3February2013);Telecompaper14June2011, 'KroessaysDutchnetneutralityrulespre mature'<<http://www.telecompaper.com/news/kroes-says-dutch-net-neutrality-rules-premature--809381>>.

신규제기관)은 P2P에 대한 계약상 제한이 90%의 사업자들에 의하여 강요되고 있으며, 인터넷 전화에 대한 계약상 제한은 56%의 모바일 사업자들에 의하여 기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인터넷 이용자들의 20%와 잠재적으로는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들의 절반가까이가 인터넷 전화나 P2P와 같은 서비스 제한을 허용하는 계약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트래픽 관리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2012년 8월 경, 이스라엘 통신부는 망중립성 원칙을 모바일에서 모든 통신 사업자에게 확대하는 제안을 제출하였다.

- 2012년 12월 경, ITU는 두바이에서 국제통신규약(ITRs)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다른 요금부과모델에 대한 몇몇 주장들, 예를 들면 발신자비용부담(SPNP, Sending party network pays) 모델 같은 것들이 제안되었으나 이 제안들에 대한 다수의 비판이 제기된 이후 채택되지 않았다.<sup>138)</sup> ETNO는 추가적으로 “개발될 차별화된 서비스 전송 품질과 관련된 상업적 약정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ITU 회원 국가들이 망중립성 규제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된 제안을 하였으나, 이 규정도 채택되지 않았다.

- 2012년 12월에 슬로베니아 의회는 망중립성 법안에 대하여 찬성하였다. 이 법안은, 제한된 정당한 목적 사유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터넷 트래픽을 차단, 지연시키거나 기타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점에서 네덜란드 법과 유사하다.

- 2012년 11월 경 BEREC은 망중립성에 대한 활동 방향과 위치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문서에서 BEREC은 “개방적 인터넷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의 규제 수단들이 충분히 적용될 때, 국내규제기관(NRAs)이 망중립성 관련 문제들을 다룰 수 있어야만 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sup>139)</sup>

- 2013년 1월 네덜란드 망중립성 법이 발효되었다.

- 2013년 3월에 프랑스 정부의 요청으로 프랑스 전국 디지털 위원회가 정부에 대하여 법에 망중립성 의무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권고하는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이 제안서는 너무 모호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몇몇 비판을 받았다.<sup>140)</sup>

138) E.g. Forbes 8 September 2012, 'Why is the UN Trying to Take over the Internet?' <<http://www.forbes.com/sites/larrydownes/2012/08/09/why-the-un-is-trying-to-take-over-the-internet/3/>>(l.c.o.18March2013);seealsoBEREC14November2012,'BEREC'scommentsontheETNOproposalforITU/WCITorsimilarinitiativesalongtheselines'<[http://bereg.europa.eu/eng/document\\_register/subject\\_matter/berec/others/1076-berecs-comments-on-the-etno-proposal-for-ituwcit-or-similar-initiatives-along-these-lines](http://bereg.europa.eu/eng/document_register/subject_matter/berec/others/1076-berecs-comments-on-the-etno-proposal-for-ituwcit-or-similar-initiatives-along-these-lines)>.

139) BEREC November 2012, 'BEREC' s comments on the ETNO proposal for ITU/WCIT or similar initiatives along these lines' <[http://bereg.europa.eu/eng/document\\_register/subject\\_matter/berec/others/1076-berecs-comments-on-the-etno-proposal-for-ituwcit-or-similar-initiatives-along-these-lines](http://bereg.europa.eu/eng/document_register/subject_matter/berec/others/1076-berecs-comments-on-the-etno-proposal-for-ituwcit-or-similar-initiatives-along-these-lines)>

140) BEREC November 2012, 'BEREC' s comments on the ETNO proposal for ITU/WCIT or similar initiatives along these lines' <[http://bereg.europa.eu/eng/document\\_register/subject\\_matter/berec/others/1076-berecs-comments-on-the-etno-proposal-for-ituwcit-or-similar-initiatives-along-these-lines](http://bereg.europa.eu/eng/document_register/subject_matter/berec/others/1076-berecs-comments-on-the-etno-proposal-for-ituwcit-or-similar-initiatives-along-these-lines)>

• 2013년 9월 경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연결된 유럽(the Connected Europe)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럽 전자 커뮤니케이션 단일 시장 규칙(Regulation) 초안을 발표하였다. 제23조에 따르면, 좁게 제한된 정당한 목적에 대하여 규정된 제한적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비례적인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 콘텐츠와 어플리케이션의 차단과 속도제한은 금지된다.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망중립성의 원칙을 법과 정책에 규정하려고 하는 명백한 경향이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인권에 대한 고려는 망중립성 논쟁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망중립성과 관련된 법적 규정을 채택하거나 제안한 몇몇 용어들에 반영되어 있다.

현재 유럽의 망중립성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로는, 규칙(Regulation) 초안에서 애매하게 여지를 남겨 둔 특별 서비스(Specialized Service)의 정의와 경계, 그리고 망중립성의 진정한 보호에 있어서 필수적인 “우선순위 선점에 따른 대가지불(pay-for-priority) 사업 모델의 금지” 등이 있으나, 위 초안의 표현만으로는 명백하지 않다.

**[참고 문헌]**

Belli & Van Bergen 2013: Belli, L and Van Bergen, M., A Discourse-Principle Approach to Network Neutrality: A Model Framework and its Application, in Belli L. & De Filippi P. (ed.), The Value of Network Neutrality for the Internet of Tomorrow, Report of the Dynamic Coalition on Network Neutrality, 2013, available at [\[nebula.wsimg.com/a0d2191d5788b8177915108786bfba7a?AccessKeyId=B45063449B96D27B8F85&disposition=0\]\(http://nebula.wsimg.com/a0d2191d5788b8177915108786bfba7a?AccessKeyId=B45063449B96D27B8F85&disposition=0\).](http://</a></p>
</div>
<div data-bbox=)

Bendrath & Mueller 2010: Bendrath, R. & Mueller, M. The End of the Net as we know it? Deep Packet Inspection and Internet Governance, available at <http://ssrn.com/abstract=1653259>.

CBUI 2002: Ex Parte Letter from CBUI to Michael K. Powell, FCC Chairman, CC Docket Nos. 02-33, 98-10 & 95-20, CS Docket No. 02-52, and GN Docket No. 00-186 (November 18, 2002).

Lemley & Lessig 1999: Lemley, M.A., Lessig, L., Ex parte declaration of Professor Mark A. Lemley and Professor Lawrence Lessig in the matter of: Application for consent to the transfer of control of licenses of Mediaone Group, Inc. to AT&T Corp, CS Docket No. 99-251, before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Lessig 1999: Lessig, L., 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 New York: Basic Books.

Lessig & Wu 2003: Lessig, L. and Wu, T., A Proposal for Network Neutrality, Ex Parte Submission in CS Docket No. 02-52 (August 23, 2003).

Noam 1994: Noam, E. M., Beyond Liberalization II: The Impending Doom of Common Carriage, Telecommunications Policy Volume 18, Issue 6, August 1994, Pages 435-452.

Nunziato 2009: Nunziato D., Virtual Freedom, Net Neutrality and Free Speech in the Internet Age. Palo Alto,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9.

Privacy International & GreenNet 2003: Banisar, D. et al, Silenced: an international report on censorship and control of the internet, Stanford, Privacy International & GreenNet Educational Trust 2003,



available at <http://www.privacyinternational.org/survey/censorship/silenced.pdf>.

Van Schewick 2010: Van Schewick, B., Internet Architecture and Innovation, London, The MIT Press 2010.

Van Schewick 2012: Van Schewick, B., Network Neutrality and Quality of Service: What a Non-Discrimination Rule Should Look Like, The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 June 2012.

Wu 2002: Wu, T., A Proposal for Network Neutrality, available at <http://www.timwu.org/OriginalNNProposal.pdf>.

Zittrain 2008: Zittrain, J., The Future of the Internet and How to Stop I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8.